6.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－120號 1997. 4. 25

주 요 골 자

가.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자선정 평가기준에 전문화의 정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함.

나. 품질보증계획의 세부내용을 KS A 9001, 9002 또는 9003의 규격에 따라 수립토록 함.

다. 현행 품질시험비용 산출기준은 장비손료, 인건비, 공공요금, 재료비 등 직접비용만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품질교육훈련비, 품질보증계획수립비, 품질시험 부대비용 등의 간접비용도 기타 품질관리비로 추가 계상하도록 개정함.

라. 공장등급인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와 공장심사를 위한 공장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마.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기간을 현행 1～3주에서 1주이하로 단축조정하고 공모방식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케 하는 등 교육기관 지정절차를 구체화함.

개 정 이 유

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